

「사전 협의했는데 개정은 깜깜(아이에겐 죄가 없다)」
보도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- 4. 13. 경기일보에서 보도한 “사전 협의했는데 개정은 깜깜..엇बाट자 행정에 커지는 불신(아이에겐 죄가 없다)”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- 기사 내용 중 「경기도는 지난 12월 미등록 이주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을 위해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를 법무부와 구두협의 했으나, 4개월 동안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에 나서지 않았다」는 부분 관련
 - 지난 해 12월부터 법무부는 미등록 아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출입국관리법령 상 통보의무 면제대상에 포함되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 - 현재 경기도는 통보의무 면제 대상이 되는 일선 공무원의 직종과 직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세부안을 보완중에 있으며, 법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.

그간의 주요 논의 경과

- ▶ (25.12.) 경기도의회에서 미등록 아동 관련 통보의무 면제를 법무부에 건의
- ▶ (25.12.) 법무부에서 통보의무 면제 대상인 공무원 및 직무 특정을 경기도에 요청
- ▶ (26.3.) 경기도에서 통보의무 면제 대상 상세의견을* 법무부에 제출
- * 경기도 조례 제7조(미등록아동 확인서 발급), 제9조(어린이집, 유치원 보육서비스 등)
- ▶ (26.4.) 법무부와 경기도는 상세의견 세부 조정을 위한 협의 중

□ 기사 내용 중 「법무부 관계자가 “적극행정을 하면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”」는 부분 관련

○ 법무부는 보도된 내용과 같은 언급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.

담당 부서	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	책임자	과 장	유성오 (02-2110-4075)
		담당자	사무관	손병찬 (02-2110-4076)

